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영주차장 주차방해행위 금지의무 및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4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2212744)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공영주차장 주차방해행위 금지의무 및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안 제6조의3 및 제30조제3항)	2
※ 참고자료	9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2212744)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9. 5.

다. 회 부 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공영주차장 주차방해행위 금지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6조의3 및 제30조제3항)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¹⁾이 설치한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구획²⁾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u>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u><신설></u>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 ----- ----- ----- ----- ----- <u>다음 각 호의</u> ----- ----- 1. <u>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u> 2. <u>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u>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인 장을 말함.(「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

2)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주차장법」 제2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3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u>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u> 제3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1. ----- -----취사행위,----- ---행위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단위구획³⁾에 물건 적치나 주차장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정상적인 주차를 방해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주차장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함⁴⁾.

3)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주차장법」 제2조제7호)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행위 금지 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 현재 일반 주차구역에 대해 주차방해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일반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행위 금지의무와 그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차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방해행위 규제 필요성을 주차장의 종류별로⁵⁾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중 도로에 설치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물건 방치 등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유사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징역·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음⁶⁾.

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 및 설치 주체

구 분	내 용	설치주체	비고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법 제2조제1호가목)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영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법 제2조제1호나목)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영
		민간 등 그 외	민영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공영
			민영

6)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交通安全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交通安全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놀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췌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그런데, 공영주차장 중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그 설치 기관의 시설관리책임 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⁷⁾에 근거하여 주차질서를 관리하게 되므로 법령에 따른 금지의무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 기관이나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용자 간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방해 수준, 이용자 불편 정도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②·③ (생략)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7)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대해 주차장 관리자의 질서유지 조치를 넘어 법률상 금지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통해 행정청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건 적치, 통행로 차단 등의 주차 방해행위가 특별히 공영주차장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관리책임이 명확한 공영주차장보다 일반 민간주차장에서 주차 방해행위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바, 합리적인 규제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에 대해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제2202557호,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참고1. 참조)

셋째, 안 제6조의3제2호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주차방해행위는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인데,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는 행위’,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외에 “등”에 해당하는 주차방해행위가 불명확하므로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⁸⁾하는 것이 입법원칙상 바람직함.

넷째, 개정안에서는 주차방해행위 금지의무와 함께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금지행위 준수 의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제재수단인 과태료 규정을 연계하여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봄.

참고로, 현행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따른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행위,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50만원 이하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0만원 이하¹⁰⁾임.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도

8) 위임 입법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로에 물건적치행위 등 금지행위와 실효성 확보수단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노외·부설주차장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어¹¹⁾ 관리자의 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서울특별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을 고려하여 적정금액 부과가 필요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주차방해행위에도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민원 야기 가능.

문 의 처
02)6788-5584

11)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참고1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557호,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2024.8.5.)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39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u><신 설></u> 제6조의4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u><신 설></u>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2039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의4(주차단위구획의 무단 점거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u>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누구든지 <u>주차장의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제1항에 따른 무단 점거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 (현행 제6조의4와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

1. (생략) <u><신설></u> <u>2. ~ 4.</u> (생략)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제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한 자</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u>----- ----- ----- -----.
---	---